

#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2026. 6.

교육부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기존 정책의 성과·한계 .....	2
III. 사업 추진 방향 .....	4
IV. 사업 추진 체계도 .....	5
V. 사업 주요 내용 .....	6
VI. 지정 및 운영 계획 .....	16
VII. 향후 추진 일정 .....	21

## I. 추진 배경

### □ 지역 정주와 지속적 발전의 핵심적 요소, 교육


- 초저출산 기조의 고착화 및 수도권 인구 쏠림 등으로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
  - ※ '학생 수 감소 ⇨ 소규모학교 증가 및 교육 여건 악화 ⇨ 젊은 층 이탈 ⇨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교육'은 지역 정주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인 만큼,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양질의 교육 보장 및 인구 추가 이탈 방지 필요
  - ※ **국정목표3**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꾸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 초광역화 흐름 속, 생활권 단위의 교육 문제 대응 필요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권역 단위 자원 공유 등을 위해 5극3특 다극 체제로의 개편, 행정통합 추진 등에 따라 초광역화 추진
- 다만, 초·중등 교육은 생활권(기초) 기반으로, 동일 광역권내에서도 교육여건 등이 상이해 광역 단위 정책으로는 효과적 대응 곤란
  - ※ **예** 강원 A시 초중고 학생 수 4.2만명, 고교 15개 ↔ B군 초중고 학생 수 0.1만명, 고교 1개

### □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모델 구축 추진

- 지역의 교육 문제는 교육 영역을 넘어 정주, 복지, 산업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협력이 필수적
- 현행 교육제도는 일정 인구가 유지될 때 안정적 교육 기반 구축에는 유효하나,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 곤란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특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로 다양한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해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의 핵심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모델 창출 필요

## II. 기존 정책의 성과·한계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미래교육지구, 교육특구의 성과·한계를 분석

### 1. 미래교육지구('20~'23)의 추진 성과·한계

#### □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 (개요)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교 교육 지원 및 주민 참여 기반 구축
  - ※ '20년부터 '23년까지 총 33개 지구(기초 단위)를 운영, 지구 당 연간 1억원 지원
- (성과) 교육정책을 지역에서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했으며, 일부는 교육협력센터 등이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
  -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간 연계 활성화로 지역사회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기반이 형성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에 기여

#### □ 한계점

- (초·중학교 중심) 돌봄, 방과후 활동, 마을체험 교육 등 초등 프로그램에 집중되면서 고등학교 및 대학·산업과의 연계 등이 부족
- (재정 규모 제약)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던 점으로 인해 지역 교육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어려움 발생
- (제도화 부족) 법령·제도적 기반 없이 사업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 보장 곤란 (일부 지역 조례 제정·운영)
- (외연 확장의 한계)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또는 지역 인재 양성 정책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책 범위·영향력에 한계 존재

👉 '지역사회 참여'의 취지는 유지하되,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교육혁신'으로 정책 비전 고도화

---

## 2. 기존 교육특구의 추진 성과·한계

---

### □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 (경과) 교육특구 계획 발표('23.12.) 이후 총 3차례의 지정을 통해 총 64건의 교육특구(7개 광역, 94개 기초)를 시범 운영
  - ※ (1유형) 기초지자체장-교육감 공동 신청 / (2·3유형) 광역지자체장-교육감 공동 신청
- (성과)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의 교육 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협력하는 계기 마련

### □ 한계점

#### 【거버넌스 측면】

-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대부분 단순 집행 기능에 그쳐 생활권 중심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
  - ※ 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던 1유형도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주도적 역할이 부족했으며 지역·개인의 역량에 의존
- 행정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 주민, 풀뿌리 단체 등의 참여나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
  - ※ 기존 교육특구는 지역사회 영역이 제한적이었으며,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역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필요('26.2., 마을교육 전문가 간담회)

#### 【추진과제 측면】

-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교육개혁 과제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 없이 대체로 유사한 과제 추진
  - ※ 기존 특구는 지자체별 차별화된 사업 구성이 곤란했으며,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모델 운영 필요('26.3., 교육특구위원, 지역교육 전문가 간담회)

#### 【기반 측면】

- 교육특례의 근거 법률이 없어 과감한 교육 혁신 추진에 한계
-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지원했으나, 중앙 단위의 일회성 자문 중심의 컨설팅에 그쳐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우수모델 창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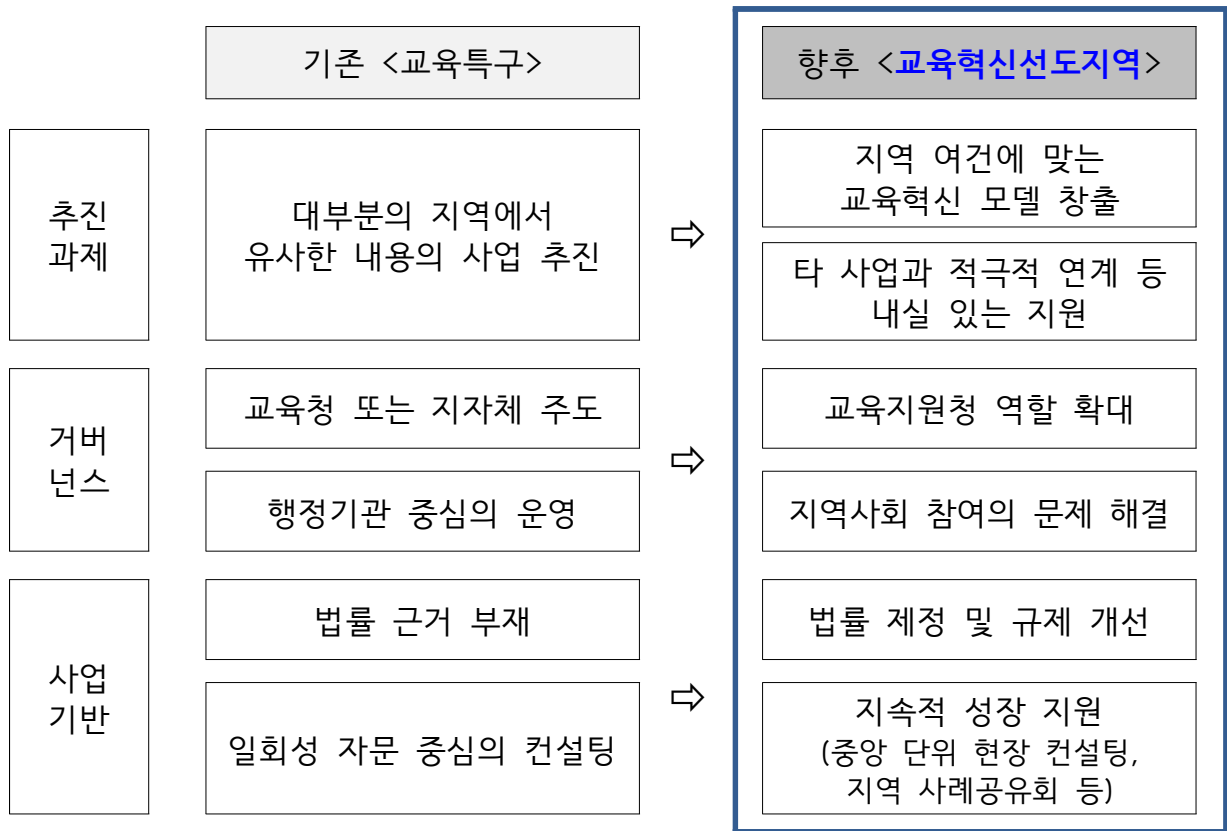
---

👉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교육특구의 성과는 고도화하되, 한계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발전 방향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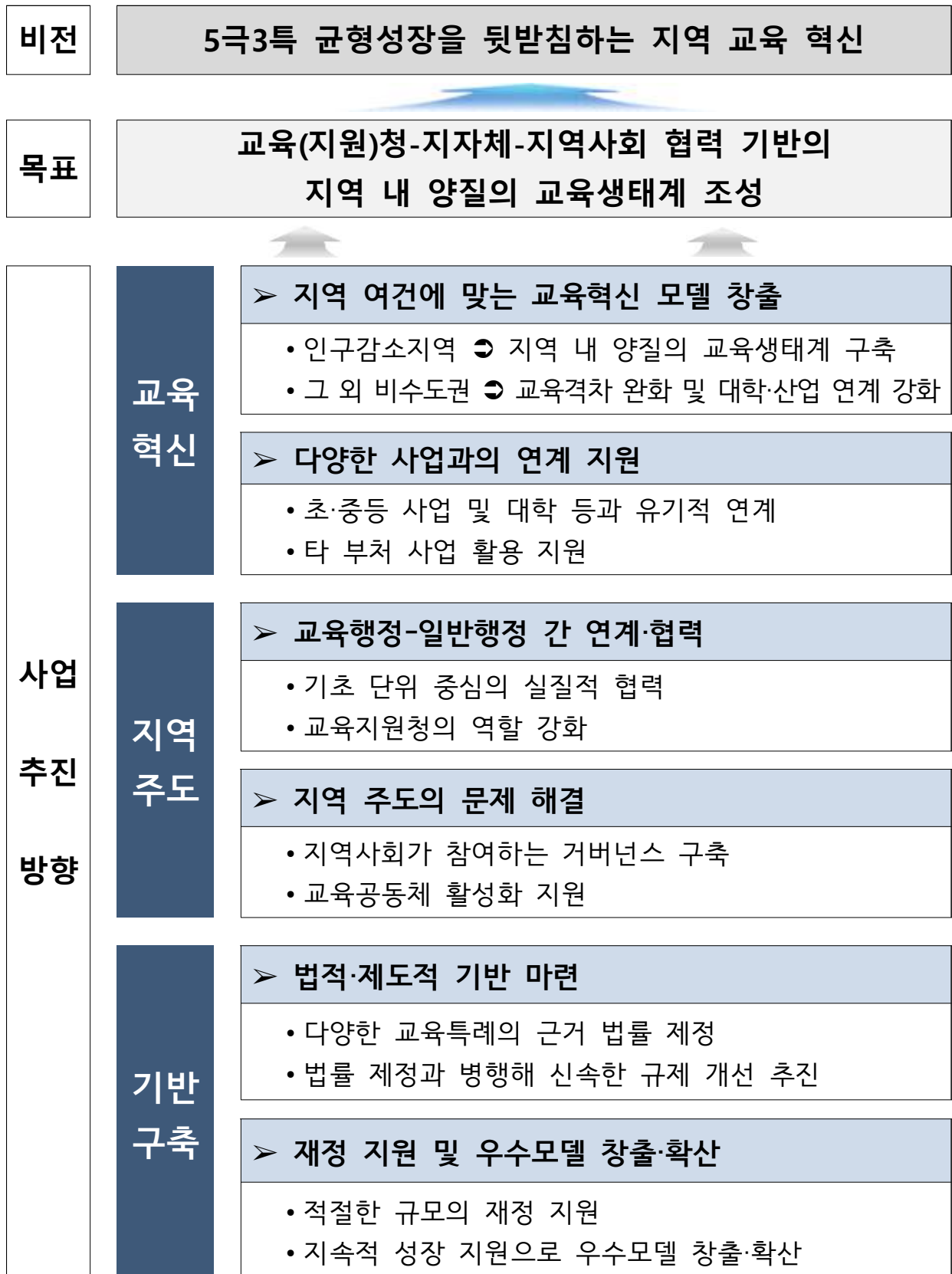
---

### Ⅲ. 사업 추진 방향

❖ 지역에서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한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개편



## IV. 사업 추진 체계도



## V. 사업 주요 내용

### 교육혁신 1.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

☑ 인구규모, 학교·인프라 등 지역 여건에 따라 1유형(인구감소지역)/2유형(그 외 비수도권 등)을 구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교육혁신 계획 수립·추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위한 지역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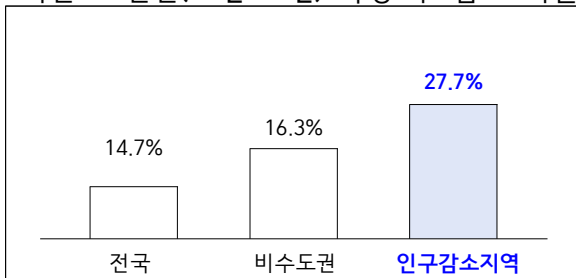
1유형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법」 상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시’, ‘군’ (9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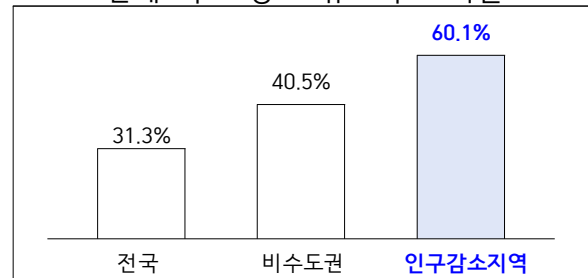
#### ◆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며,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대비 2배에 해당

지난 10년간('16년~'25년) 학생 수 감소 비율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 비율



-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경험 제한, 교원의 순회지도 등으로 행정·교육 업무 가중 등 다양한 문제 야기

#### ◆ 그간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의 한계

- ❖ 교육부, 교육청 등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립·추진
  -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안내('15)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보통교부금)
  - (교육청) 학교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는 ‘농촌유학’ 등 추진

- (개별 학교 중심의 대응) 기존에는 개별 학교, 특정 학교급 관점의 대응으로, 지역 교육 전반의 혁신적 변화에는 한계
  - (협력 부족) '학교의 위기'는 '지역의 쇠퇴'와 직결되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지역사회와 적극적 협력 부족
  - (제도 유연성 부족) 현행 교육제도는 인구 유지기에 안정적 교육 지원에는 적합하나, 소규모학교 혁신 등을 위한 유연한 대응 곤란
- ⇒ '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사회' 플랫폼을 통한 소규모학교 혁신으로 학생들이 지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추진 과제

-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과제 자율 추진 가능

필수 과제	자율 과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li> <li>☞ 지역 내 모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장 공모 및 실질적 권한 부여</li> <li>•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지역 상생</li> <li>• 마을 공동체 기반 돌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li> <li>•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농촌 유학 활성화</li> <li>•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등 운영</li> <li>• 신규교사 성장 지원 및 관사 지원 강화, 교과 연구회 등 학습공동체 지원</li> <li>•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li>• 지역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등</li> </ul>

◆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사례

- (사례1) 지역 내 양질의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대구 군위군)
  - '학교 통합운영 TF' 구성·운영(단장 : 부교육감), 거점학교에 교원 증원, 학습 지원 튜터, 영어교육 강화, 기숙사 설치 등 집중적 지원
  - 우수한 교육장 임명해 리더십 발휘, 교직원·학부모·군위군의회 등과 지속적 소통
- (사례2)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전남 고흥군)
  - 교육지원청 주도로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공동교육과정 개발, 학습공동체(교과연구회 등) 운영 지원, 학생 이동 및 공동급식 등 행정적 지원
  - 학생 간 소통·협력이 필요한 수업·과목을 추출해 학교 간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설계·운영
- (사례3)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및 지역 특화 교육 추진 (경남 남해군)
  - 협동조합(학부모·지역주민 참여)에서 마을돌봄 운영, 마을 주민이 전문 분야의 강사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
  - 기존 중학교를 인성교육·체험교육 등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고 협동조합과 협력해 지역 여건·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 추진

**2유형  
비수도권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기초지자체(시·군)
- 「접경지역법」에 따른 수도권의 접경지역(시·군) ※ 인구감소(관심)지역 → 1유형
- 비수도권의 광역시·특별시,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세종·제주)

◆ **비수도권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 속도, 소규모학교 비율** 등이 **양호**하며, **대학·기업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
  - \* 인구감소(관심)지역(1유형) : 대학·전문대학의 13.9% 소재, 공공기관의 5.1% 소재  
그 외 비수도권 지역 등(2유형) : 대학·전문대학의 56.2% 소재, 공공기관의 48.7% 소재
- 다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며, **도농복합적 특성 및 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 내 교육 격차(도-농, 원도심-신도심 등) 발생\*\***
  - \* 최근 20년간('04~'24) 19~34세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순유출
  - \*\* 주요 대도시의 동일 생활권 내에서 특정 학교 쏠림현상을 보이며 대·소규모학교가 공존하는 국지적 양극화 발생(KEDI, 2025)
- 또한 수도권 대비 **양질의 교육서비스, 문화 시설, 진로체험 기회** 등이 **부족해 충분한 교육적 경험 제공에 어려움** 발생

◆ **비수도권 지역의 추진 과제**

-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는 필수적으로 추진
  -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했던 지역은 **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과제** 등은 지속 추진 가능
  - **광역지자체의 경우, 필수과제 취지를 고려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자치구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 필요**

필수 과제 : <b>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강화</b>	자율 과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원도심 등 지역 내 소규모학교 혁신</li> <li>- 도시 재생 계획 등과 연계해 원도심 등의 학교 인프라·프로그램 질 제고</li> <li>-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 집중 지원 등</li> </ul> </li> <li>• <b>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한 초·중등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지역 인재 양성 뒷받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장 공모 및 실질적 권한 부여, 광역지자체와 협력</li> <li>• 중고교 진로 개발 지원, 직업 교육, 취업·정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li> </ul> </li> <li>• 기존 교육특구로 추진한 핵심 과제 등</li> </ul> <p>※ 1유형의 자율과제(예시)도 추진 가능</p>

□ **특례를 활용한 지역의 자율적 교육혁신 계획 수립 필요**

- (현황 분석) 지역 여건에 대해 다각적·체계적 분석\*을 실시, 이를 기반으로 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계획 수립 필요

\* ▲인구구조 및 이동패턴 (학령인구 변동, 인구 유출입 현황·원인, 다문화가정 비율 등),  
 ▲교육인프라 및 접근성 (학교·돌봄시설 분포, 디지털 교육 환경, 폐교·유휴공간 활용도),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지역 특화 산업, 특성화고·대학 학과 현황, 청년 취창업 현황) 등

- (선택·집중) 예시 과제들을 지역적 고려 없이 나열식으로 추진 하는 방식은 지양,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적인 모델 창출 필요

※ 다만, 유형별 필수과제 추진 필요

- (과제 수립) ▲현행법 상 추진 가능한 과제, ▲중장기과제 추진을 위한 준비 과제 등을 단기과제로 추진

- 특례의 근거 법률안 제정 시 특례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중장기과제로 추진

- 특례안 외에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특례를 발굴·제안 하고, 신규 특례를 활용해 추진 예정인 과제 제시 필요

구 분	특 례 안*
유치원 설립·운영	·유치원 설립기준,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교육과정 등을 조례로 정함
초등 돌봄	·교육감이 초등학생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위해 학교 밖 시설 활용 가능 ·센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학교 설립·운영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수업연한을 조례로 정함
교육과정	·다문화 학생,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가능하며, 통학구역 완화
농어촌, 소규모학교	·주소지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 학교 전·입학 허용 ·초·중, 중·고 간 교육과정 통합 운영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 교원 간 교차지도 허용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위해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허용
국유·공유 재산 대부	·학교 신증설 위해 국유·공유·폐교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허용
교육장	·교육장 임용 방식 조례에 위임(주민 참여 보장하는 임용 방식 도입 가능)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안 편성 사항 위임 가능

\* 교육혁신선도지역, 교육특구 관련 법률안(5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교육특례 '교육장'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내용 규정

## 교육혁신 2.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추진

☑ 특례를 활용한 혁신 외에도 기존의 **초·중등 사업, 대학·산업과의 연계** 및 **타 부처 사업 활용**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지원

### □ 다양한 초·중등 사업과의 연계 지원

○ 사업 간 시너지 효과 및 우수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해 사업 유형별 특성에 맞춰 초·중등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선도지역에서 초·중등사업을 포함해 지역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한 경우, 초·중등사업의 추진목적·일정 등을 고려해 연계 지원

-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초·중등 사업에 신청할 경우 해당 초·중등 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 ※ 선도지역 사업을 통한 초·중등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 등 병행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연계 방식 모색

#### < 연계 가능한 초·중등 사업 >

구분	사업 개요
폐교활용 지원	지역의 폐교를 교육 특화형 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시설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프로그램비 등 지원
학교복합시설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폐교에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 등 용도의 시설 설치
자기주도학습센터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가능한 공간 마련 및 EBS 연계 학습 지원
자율형 공립고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
마이스터고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 교육 실현

## □ 지역 대학·산업 연계 추진

-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진학·취업·정주 하고, 지역 대학·기업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과 협력 필요
  - 지역교육혁신협의체는 지역 앵커 위원회 등과 협력해 대학·기업과 교육과정, 진로·체험, 취업 등 연계 방안 마련

- (예시1) 특화 산업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체 등의 교육 실습실, 장비 등 지원,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연계 학사제도 운영
- (예시2) 지자체·학교가 지역 기업과의 채용 협약 추진 등

## □ 타 부처 사업 연계 지원

- 교육 여건 개선과 동시에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거, 일자리, 기타 생활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정주·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선도지역에서 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외 정책 수요나 애로 사항 등을 받아 타 부처와 협의 추진
  - 타 부처의 다양한 정책·사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기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장 목소리 (마을교육활동가, 학부모 등)

-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도 주거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의 지역 주민들, 새롭게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도 3. 교육행정-일반행정 간 연계·협력

☑ **초광역화 흐름 속, 생활권(기초) 단위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세밀한 대응을 위해 기초 단위의 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추진**

### □ 기초 단위의 실질적 협력 강화

- 실제 생활권인 기초 단위(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체감도 높은 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만, 기초지자체 자원(기업·대학연계, 재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교육 혁신 추진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의 협력 필요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해 정례화된 협의, TF 구성·운영, 파견, 공동 조례 제정 등 추진

### □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 기초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 및 기초 단위의 책임있는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필요
  - 지역 전문성을 갖춘 교육장에 대해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하고 재정·인사 관련 적절한 권한 부여(조례제정 등) 등 지원

- (예시1) 교육장에게 관할하는 학교 교원의 초빙(요청) 권한 부여
- (예시2)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예산 규모에 대한 편성·운영 권한을 교육장에게 부여

※ 【참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교육장 임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 도입 가능 (제77조 제6항)
- 지역 주민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안 편성, 인사 관리 관한 사항 등 일부 위임 가능 (제77조 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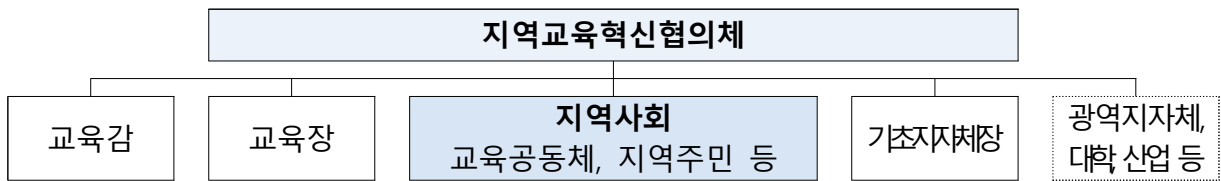
- 교육감은 광역 단위 주요 교육 정책(교원 관련, 고교 입시, 조례안 마련 등)에 대한 적절한 방향 설정 등을 통해 선도지역 운영 지원

## 지역주도 4. 지역 주도의 문제 해결

- ☑ 지역주민, 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를 거버넌스의 주요 축**으로 구성하여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교육 문제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계획 수립·점검, 의견수렴 등 추진



### □ 지역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 (발굴·양성) 교육청·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문제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발굴 및 양성**
- (자원 활용) 지역 주민, 학부모, 교육공동체 등이 지역 문화·환경·역사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교사**로 참여
  - 개발된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에 반영, **방과후 과정** 또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 (기반 구축)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학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제도적 지원**(조례 등)
  - \* (기능)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네트워크 구축, 교육공동체 육성·모니터링·컨설팅 등
    -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 내 조직으로 운영, ▲대학·민간 등에 위탁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 가능

- (사례1) 교육청 산하 시민협치진흥원을 설립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 (사례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
- (사례3) 재단법인을 설립, 교육청·지자체 직원 파견해 학교-지역사회 지원

## 기반구축 5.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근거 법률 제정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해 **교육특례 추가 및 제도화** 추진

### □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 마련

○ (특례 부여) 지역의 교육혁신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및 특례 부여 추진

- (입법 추진) 지역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추진('26)

\* 농어촌학교 전·입학,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교원 교차지도, 다문화 학생 교육과정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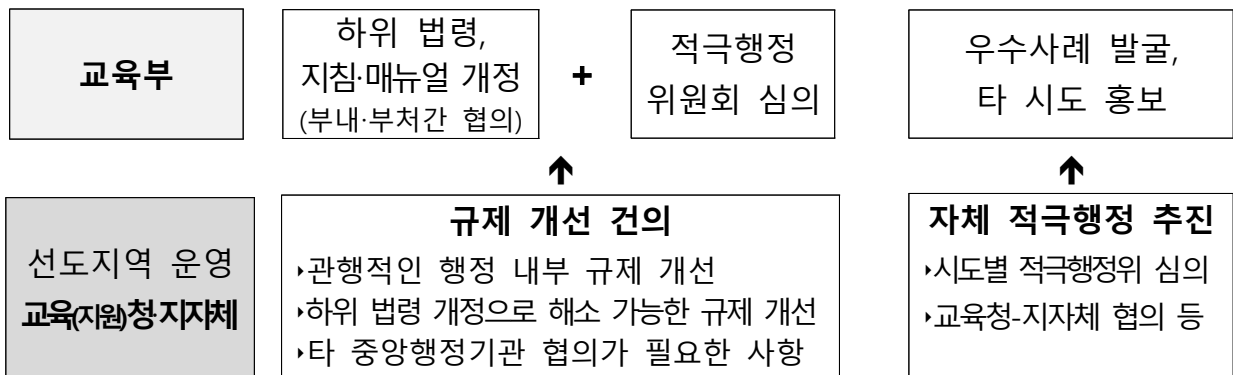
※ 근거 법률 제정안(김민전·김도읍·김문수·박상혁·고민정의원) 5건 국회 계류

- (지역 수요 반영) 선도지역 운영 과정에서 지역에서 희망하는 신규 교육특례를 신청 받아 법률 개정 추진

- (제도화 추진) 규제특례 적용 성과가 우수하고 전국적 확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의 모범을 개정해 제도화 추진

### □ 신속한 규제 개선 추진

○ 근거 법률 제정 전, 지역별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받아 하위 법령, 지침·매뉴얼 개정 등 신속 개선 규제 우선 검토·시행



## 기반구축 6. 재정 지원 및 우수모델 창출·확산

- ☑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선도지역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통해 교육혁신 **우수모델 창출 및 확산** 지원

###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정 지원

- (우수모델 인센티브)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교육혁신 계획이 우수한 지역(10개 이내)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인센티브 10억 원 이내)
- (대응투자) 지역의 부담 및 지역별 재정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투자비율 **완화·차등 적용**

※ 대응투자금은 지역의 교육혁신 계획 추진 목적으로 집행 필요(교육기관의 교육·지원 활동 및 교육 여건 개선, 학습자의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인프라·생태계구축에 직접적 기여 등)

교육특구의 대응투자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대응투자			
교부금 대비 지방비 100% 대응투자		재정자립도	20%미만	20%이상	30%이상
		대응투자	30%	40%	50%

###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속적 성장지원 및 우수모델 확산

- (중앙 컨설팅)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지역 여건·과제 성격 등에 따라 지역 유형별 컨설팅 추진
- (지역 자율 컨설팅) 지역의 연구원·대학 등을 활용해 지속적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정기적 사례 공유회를 통한 상호 벤치마킹 지원

중앙		지역	
컨설팅단 구성	현장 컨설팅	자율 컨설팅	교육혁신 사례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교육(초·중등/대)·산업 전문가 풀 구축</li> <li>• 과제·지역 유형별 컨설팅단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 항목지표 등 진단 매뉴얼 마련</li> <li>• 현장 실사, 인터뷰</li> <li>• 실행과제 도출 지속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지자체 소속 연구원, 지역 대학 등을 활용해 지역 자율 컨설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혁신선도지역 간 협의체 구성</li> <li>• 정기적 사례공유회를 통해 지역별 우수 사례·애로 사항 공유, 상호 벤치마킹</li> </ul>

## VI. 지정 및 운영 계획

### 1. 지정 개요

#### □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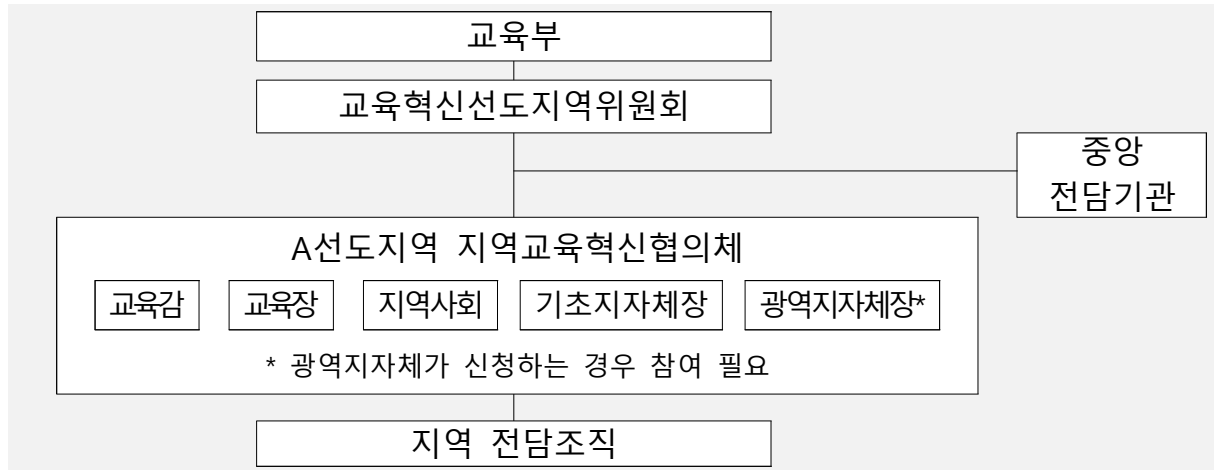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1호의 ‘인구감소지역’, 제1의2호 ‘인구감소관심지역’(시·군)
-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 「접경지역법」 상 수도권 접경지역(시·군)
-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세종·제주)

#### □ 신청 및 지정 절차

- 지역에 적합한 교육혁신 추진을 위해 ‘운영기획서’를 평가해 선도 지역 지정 후,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서’로 보완·구체화

절 차	내 용	주 체
① 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구성	○ 교육감, 기초지자체장, 교육장, 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며, 선도지역 협약안 작성 ※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광역 지자체와 앵커 관계자 참여	교육감, 교육장, 기초(광역)지자체장, 교육공동체 등
② 협약 체결	○ 교육감과 기초지자체장 등은 교육혁신선도 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선도지역 협약)을 체결	교육감, 기초(광역)지자체장 등
③ 운영기획서 제출	○ 교육감과 기초지자체장은 지역의 운영기획서 공동 작성·제출 *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기대효과, 규제특례, 지역 주민 의견수렴 내용 등	교육감, 기초(광역)지자체장 → 교육부
④ 운영기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지역의 운영기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⑤ 선도지역 지정		
⑥ 컨설팅 추진	○ 선도지역에 대해 컨설팅 추진 ○ 운영기획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단 → 선도지역
⑦ 운영계획서 제출	○ 선도지역에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서 함께 수립 필요	선도지역 → 교육부

## □ 운영 체계



-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선도지역 지정·변경·해제, 특례 부여, 성과 평가 등을 위해 교육부에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의 전담기관) 전담기관을 지정해 선도지역 컨설팅 등 성장 지원, 선도지역 지정 지원 및 관리 등 추진
- (지역의 전담조직)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및 지속적 성과관리 등을 위해 전담조직(중간지원조직 등) 구성·운영

## □ 지정·지원 내용

- (지정 규모) '26년 총 40개 내외
  - 1유형 30개 내외 / 2유형 10개 내외 지정
  - ※ '27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가 지정 예정
- (재정 지원 등) 지역당 20억원\* 이내(특별교부금), 최대 5년(3년 + 2년)
  - \* 광역지자체의 경우 40억 원 이내 지원  
(필수과제 취지 고려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자치구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 필요)
  - 연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3년 운영 후 단계 평가를 거쳐 2년 추가 지원
  - 다만, 특례의 적용 기간은 재정 지원 기간과 다를 수 있음
  - ※ 재정 지원 종료 후에도 재정 지원 없이 특례만 적용 가능 (필요 시)
  -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30~50% 대응 투자 필요

■ 유형별 주요 지원 및 사업 내용 ■

	1유형 (인구감소지역)	2유형 (그 외 비수도권)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li> <li>인구감소관심지역 ※ '자치구'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도권 기초지자체 ※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li> <li>수도권의 접경지역</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도권의 광역시·특별시</li> <li>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li> </ul>																										
지정 규모	30개 내외	10개 내외																										
	※ 신청 규모에 따라 지정 규모 조정 가능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기본)</b> 기초지자체 당 20억 원 이내 지원 ※ 광역지자체의 경우 40억 원 이내 지원</li> <li><b>(대응투자)</b> 지역 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비율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재정자립도</td> <td>20%미만</td> <td>20%이상</td> <td>30%이상</td> </tr> <tr> <td>대응투자</td> <td>30%</td> <td>40%</td> <td>50%</td> </tr> </table> </li> <li><b>(인센티브)</b> 교육혁신 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10억 원 이내 추가 지원 ※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대응 투자 의무 없음</li> <li><b>(소규모학교 혁신 지원)</b>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 ※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지방교육재정교)'과 연계 &lt; (예시) 교육혁신선도지역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안 &g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재정</th> <th>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th> <th>학교 통합 인센티브</th> <th>학교 운영비</th> <th>총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억원</td> <td>260억원 (3개교→1개교)</td> <td>1~10억원</td> <td rowspan="3">약 400억원</td> </tr> <tr> <td>인프라</td> <td>기숙사 설치</td> <td>학교복합시설</td> <td>폐교활용 지원</td> </tr> <tr> <td></td> <td>50억원</td> <td>40억원</td> <td>20억원</td> </tr> </tbody> </table> </li> </ul> <p>☞ 학교 통합 인센티브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따른 거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재원으로 지속 활용 가능</p>		재정자립도	20%미만	20%이상	30%이상	대응투자	30%	40%	50%	재정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	학교 통합 인센티브	학교 운영비	총계		20억원	260억원 (3개교→1개교)	1~10억원	약 400억원	인프라	기숙사 설치	학교복합시설	폐교활용 지원		50억원	40억원	20억원
재정자립도	20%미만	20%이상	30%이상																									
대응투자	30%	40%	50%																									
재정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	학교 통합 인센티브	학교 운영비	총계																								
	20억원	260억원 (3개교→1개교)	1~10억원	약 400억원																								
인프라	기숙사 설치	학교복합시설	폐교활용 지원																									
	50억원	40억원	20억원																									
사업 내용	(필수)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	(필수)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자율) 그 외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과제 추진																											

## 2. 지정 평가 기준

### □ 1유형 : 인구감소(관심)지역

항목 (배점)	평가 기준
거버넌스의 적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거버넌스(지역교육혁신협의체 등) 구성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선도지역 운영목적에 적합한 주체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가</li> <li>- 참여 주체별 역할·권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ul> </li> <li>▶ <b>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체계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예) 의사결정시스템, 업무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li> </ul> </li> <li>▶ <b>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충실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운영 계획이 적절한가(TF팀 구축 등)</li> <li>- 기초 단위에서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기 위해 교육지원청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가 (예) 교육장 공모, 일정 임용기간 보장, 적절한 권한 등)</li> </ul> </li> </ul>
혁신계획의 타당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여건 분석 및 비전 설정의 타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역의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예) 현황 분석, 원인 진단, 대안 탐색 및 사업의 구체화 등)</li> <li>- '지역 여건 분석—비전 및 목표—추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li> <li>- 소규모학교 혁신에 참여할 학교군(2~3개교 이상)을 마련하고 지역 내 유·초·중·고 양질의 교육생태계 모델을 개발하였는가</li> </ul> </li> <li>▶ <b>추진계획의 혁신성·체계성·실현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지역의 필수·자율과제의 추진계획이 혁신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예)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 통한 학교급별 우수학교 육성(교육과정·방과후 과정 특성화 등), 학생 교육 여건 개선, 폐교 활용 등)</li> <li>- 연차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는가</li> <li>-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교원·예산 등) 확보 계획이 적절한가</li> <li>-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합의 형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예) 이해관계자 소통·설득 전략, 세부 단계 등)</li> <li>- 특례안을 적극 활용(또는 신규 특례 발굴·활용)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li> </ul> </li> </ul>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선도지역 사업비 및 지자체 대응투자금 확보·집행 계획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학교 통합·개편 재정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계획 포함)</li> <li>-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투자 계획이 선도지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ul> </li> </ul>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과지표의 체계성 및 측정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의 층위(목표—세부전략 등), 운영의 시기(단기(1~2년차)—중기(3~4년차)—장기(5년차 이후))등을 고려해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선도지역의 교육혁신 목표를 견인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지역 자율적 컨설팅 등 성과 창출을 관리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li> </ul> </li> </ul>

□ 2유형 : 그 외 비수도권

항목 (배점)	평가 기준
<p>거버넌스의 적절성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거버넌스(지역교육혁신협의체 등) 구성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대학, 기업 등 선도지역 운영목적에 적합한 주체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가</li> <li>- 참여 주체별 역할·권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li>- 교육청, 광역지자체와의 협력 체계가 제시되어 있는가(지역별 계획에 따라 필요시)</li> <li>- 지역별 과제에 따라 대학·산업계 등과의 적절한 협력체계가 제시됐는가</li> </ul> </li> <li>▶ <b>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체계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예) 의사결정시스템, 업무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li> </ul> </li> <li>▶ <b>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충실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운영 계획이 적절한가(TF팀 구축 등)</li> <li>- 기초 단위에서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기 위해 교육지원청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가 (예) 교육장 공모, 일정 임용기간 보장, 적절한 권한 등)</li> </ul> </li> </ul>
<p>혁신계획의 타당성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여건 분석 및 비전 설정의 타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역의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예) 현황 분석, 원인 진단, 대안 탐색 및 사업의 구체화 등)</li> <li>- '지역 여건 분석—비전 및 목표—추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li> <li>- 지역·학교 별 교육격차, 대학교육 인프라, 지역산업 현황 분석 등에 근거해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한 인재 양성 모델을 개발하였는가</li> </ul> </li> <li>▶ <b>추진계획의 혁신성·체계성·실현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지역의 필수·자율과제의 추진계획이 혁신적으로 제시되었는가</li> <li>- 연차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는가</li> <li>- 선도지역 운영을 위해 다양한 자원 활용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됐는가</li> <li>-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교원·예산 등) 확보 계획이 적절한가</li> <li>-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합의 형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예) 이해관계자 소통·설득 전략, 세부 단계 등)</li> <li>- 특례안을 적극 활용(또는 신규 특례 발굴·활용)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li> </ul> </li> </ul>
<p>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선도지역 사업비 및 지자체 대응투자금 확보·집행 계획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i> <li>-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투자 계획이 선도지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ul> </li> </ul>
<p>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과지표의 체계성 및 측정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의 층위(목표—세부전략 등), 운영의 시기(단기(1~2년차)—중기(3~4년차)—장기(5년차 이후))등을 고려해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선도지역의 교육혁신 목표를 견인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지역 자율적 컨설팅 등 성과 창출을 관리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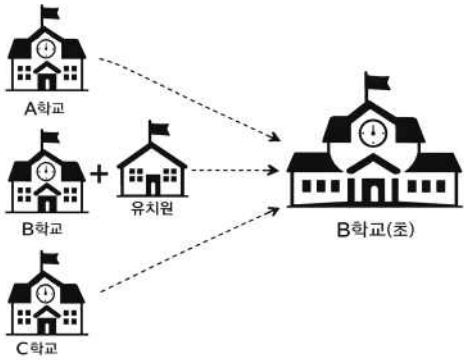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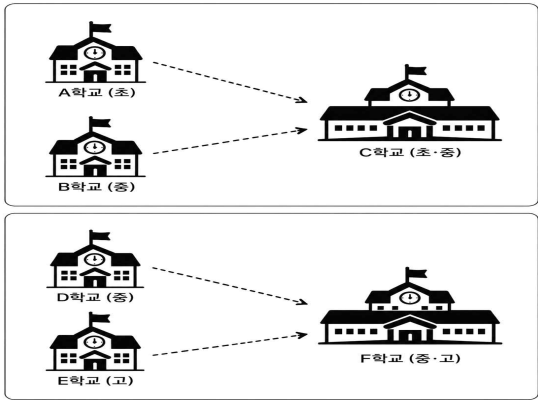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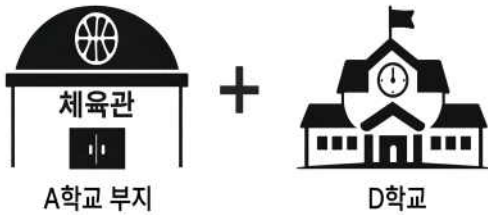
## VII. 향후 추진 일정

-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고 : '26. 6.
- 교육혁신선도지역 신청(운영계획서 제출) : ~ '26. 8.
- 교육혁신선도지역 평가 및 지정 결과 발표 : '26. 9.
- 교육혁신선도지역 컨설팅 : '26. 10. ~ 12.
-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계획서 제출 : '26. 12.
- 교육혁신선도지역 예산 교부 및 지역별 사업 추진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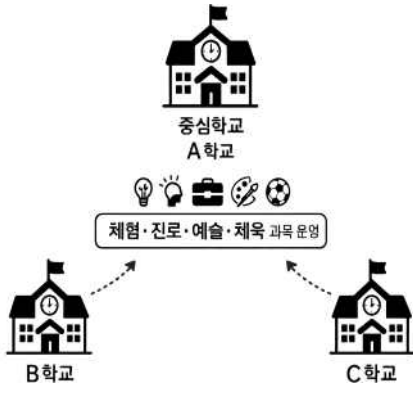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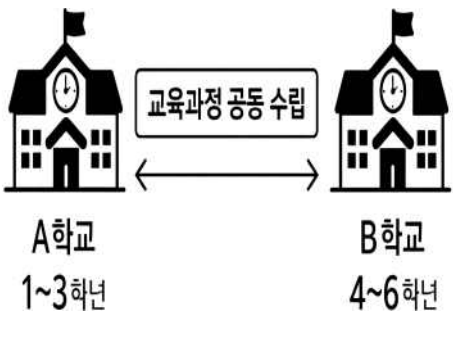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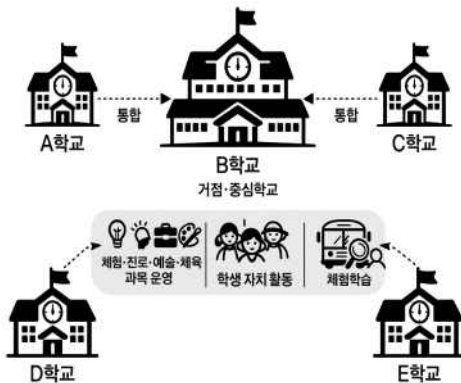
**붙임1**      **소규모학교 혁신 모델(안)**

※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 중 발취

□ **학교 통합형 운영 방식(안)**

<p><b>① (기본) 동일 학교급간 통합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념)</b> 하나의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학교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가능</li> </ul> </li> <li>■ <b>(사례)</b> 전북 부안군 하서초</li> </ul>	<p><b>② (기본) 타 학교급간 통합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념)</b> 학교급이 상이한 학교간 통합을 통해 거점학교를 신설</li> <li>■ <b>(사례)</b> 대구 호산중·고등학교</li> </ul>
<p><b>③ (확장) 어린이집·유치원 혼합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념)</b> 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돌봄 분야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 어-유-초 공동 활용</li> </ul> </li> <li>■ <b>(사례)</b> 부산 영도초 / 전북 부안군 변산초</li> </ul>	<p><b>④ (확장) 폐교부지 활용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념)</b> 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폐교 부지에 학생·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설치</li> <li>■ <b>(사례)</b> 강원 근덕초노곡분교장 웹툰센터</li> </ul>

## □ 소규모학교 연계형 운영 방식(안)

<p>① (기본) 소규모학교 캠퍼스형</p>	<p>①-1 (선행) 학교별 특성화형 ※ 기본 유형 실시 전 적용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중심학교에 인근 소규모학교의 수요가 있는 과목 공동 개설 ※ 인근 소규모학교는 분교장(캠퍼스) 형태로 개편</li> <li>▪ (사례) 제주 제주중앙여고 (AI 거점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학교 간 특성화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 방과후 과정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li> <li>▪ (사례) 경남 남해군 고현초·도마초 공동 교육과정 운영</li> </ul>
<p>② (기본) 학년 분리형</p>	<p>③ (결합) 통합형+연계형 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인근 소규모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 수립하고, 학년을 나누어 배치해 학년당 일정 규모의 학생 수 유지 ※ 1~4학년(저학년)은 각 학교에서 5~6학년(고학년)은 한 학교에 모여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li> <li>▪ (사례) 제주 무릉초-대정서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학교 통합을 통해 신설한 B학교(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의 소규모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학생자치활동 등을 연계해 운영 ※ 인근 소규모학교는 분교장(캠퍼스) 형태로 개편</li> </ul>

	군 (70)	시 (25)	자치구(12)
인구감소 지역 (89)	<p>[인천] 강화 옹진 [경기] 가평 연천</p> <p>[대구] 군위</p> <p>[강원] 고성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p> <p>평창 홍천 화천 횡성</p> <p>[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p> <p>[충남] 금산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p> <p>[전북]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p> <p>[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p> <p>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p> <p>함평 해남 화순</p> <p>[경북]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p> <p>울진 의성 청도 청송</p> <p>[경남]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p> <p>하동 함안 함양 합천</p>	<p>[강원] 삼척 태백</p> <p>[충북] 제천</p> <p>[충남] 공주 논산</p> <p>보령</p> <p>[전북] 김제 남원</p> <p>정읍</p> <p>[경북] 문경 상주 안동</p> <p>영주 영천</p> <p>[경남] 밀양</p>	<p>[부산] 동구</p> <p>서구 영도구</p> <p>[대구] 남구</p> <p>서구</p>
인구감소 관심지역 (18)	<p>[강원] 인제</p>	<p>[경기] 동두천 포천</p> <p>[강원] 강릉 동해</p> <p>속초</p> <p>[경남] 통영 사천</p> <p>[경북] 경주 김천</p> <p>[전북] 익산</p>	<p>[대전] 동구</p> <p>중구 대덕구</p> <p>[인천] 동구</p> <p>[부산] 중구</p> <p>금정구</p> <p>[광주] 동구</p>